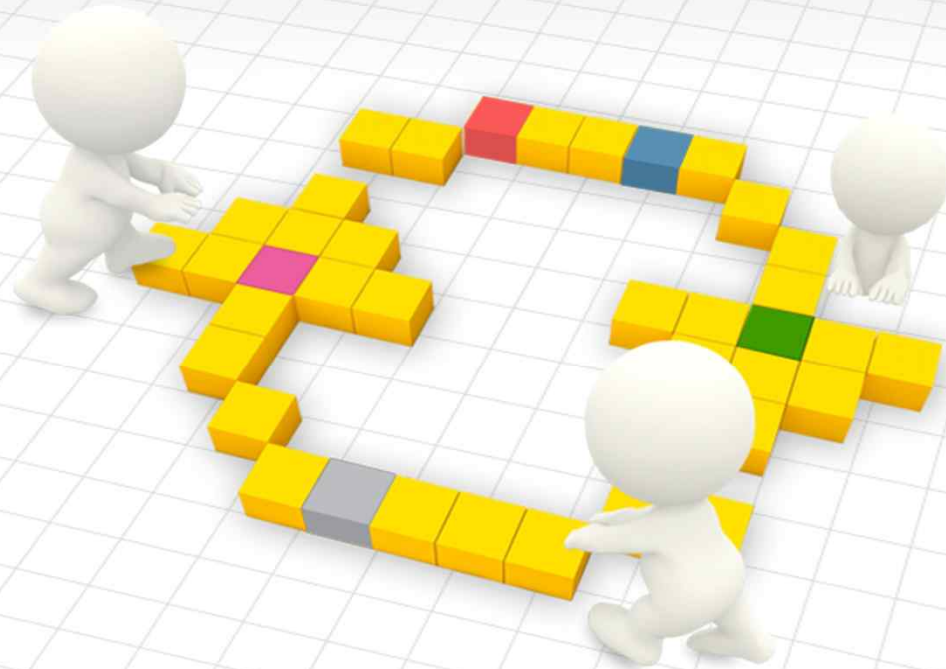


은퇴설계

제대로 이해하기_04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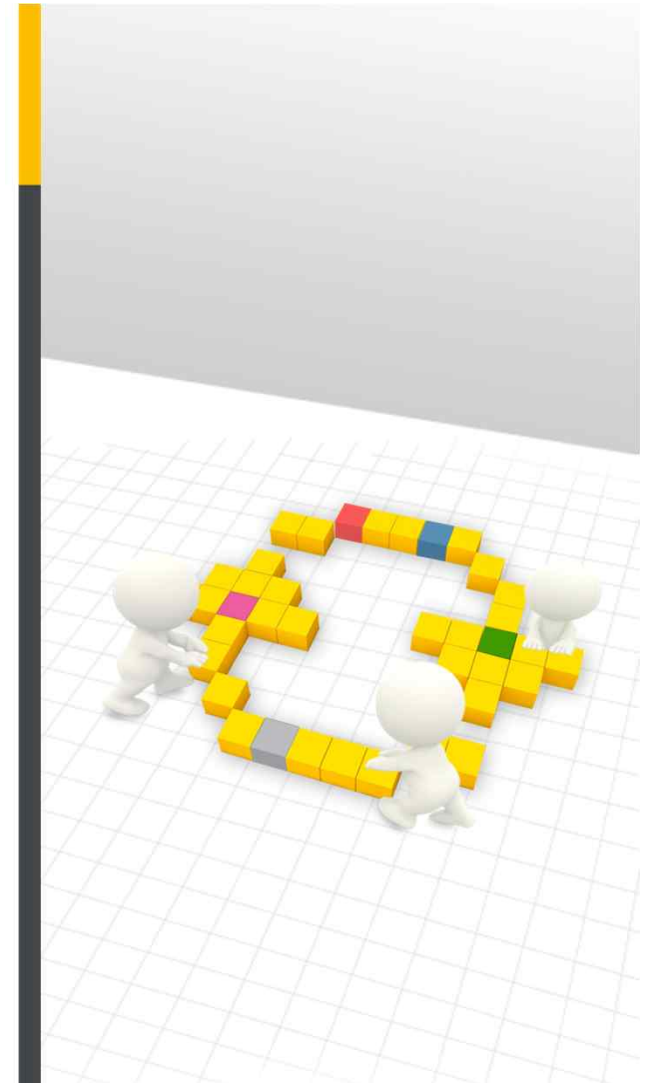
연금과 세금



강사 : 이영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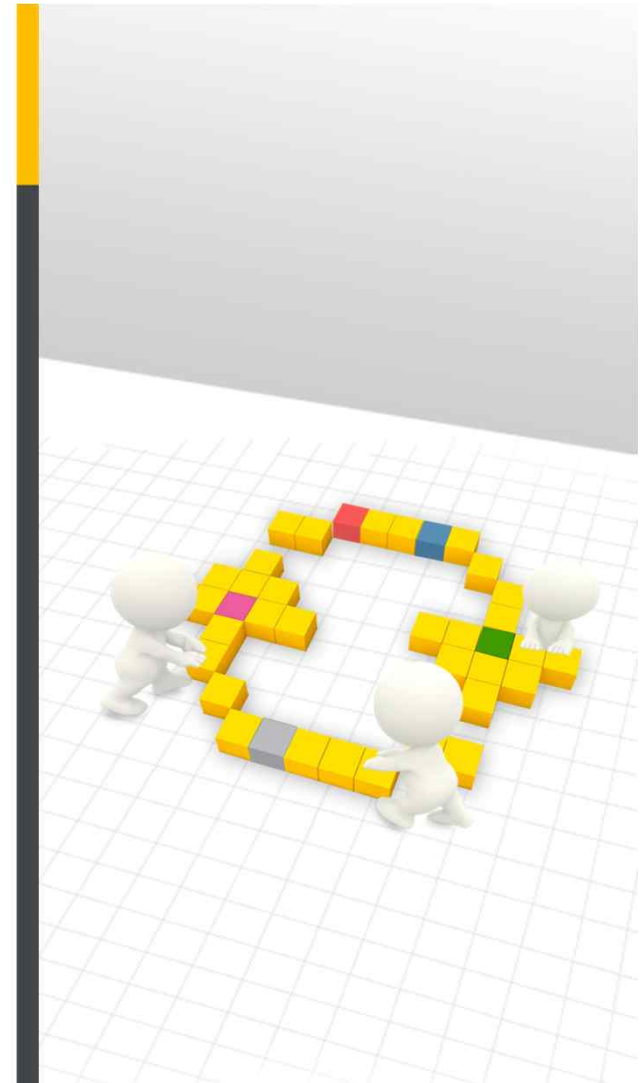
과정개요

- 1 은퇴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?
- 2 상담현장에서 하는 손쉬운 연금액 계산법
- 3 대한민국 연금상품 총정리
- 4 연금과 세금



기대효과

- ✓ 100세 시대, 은퇴설계에 대한 고객의 마인드를 이해한다.
- ✓ 상담현장에서 추가 연금제안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.
- ✓ 연금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판매력을 키운다.
- ✓ 연금세제에 대한 기본을 익혀, 현장에서의 활용력을 키운다.



연금과 세금

4-1. 연금저축 제도

● 연금저축 제도

- ✓ 소득공제 : 연금저축 납입액의 100%를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(2013년 이전)
- ✓ 세액공제 : 연금저축 납입액의 12%를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(2014년 이후)

● 특징

- 개인의 연간 소득규모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다.(2013년 기준)
- 연금 수령시 3.3%~5.5%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합산 과세(과세이연)
-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필수.
-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환급분을 반환해야 하므로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

4-2. 연금저축 제도 절세효과

● 절세 효과

연금저축은 올해 세금을 돌려주지만 연금수령시 과세하므로 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.

(단, 2000년 12. 31 이전가입 상품은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소득 비과세)

[연금저축 제도의 변화]

시 기	공제 한도	월납입액	최고환급액	특 징
2000.12월 이전	납입액 40%, 72만원 한도	15만원	28만원	연금소득 비과세
2001년	납입액 100%, 240만원 한도	20만원	95만원	연금소득 과세 5.5% 원천징수 종합소득합산
2006년	납입액 100%, 300만원 한도	25만원	119만원	
2011년	납입액 100%, 400만원 한도	33.3만원	167만원	
2014년(세액공제)	납입액×12%, 400만원 한도	33.3만원	48만원	

4-3. 연금저축 제도 세금 계산

수입금액

- 소득공제

과세표준

X 세율

산출세액

- 세액공제

납부세액

- 소득 공제
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난 후 세금을 계산하므로
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,
세율이 높은 사람(고소득자)일수록 공제 효과가 크다.
- 세액공제
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며 세금을 산출한 후
산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
소득의 크기와 무관하다. (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 불리)

4-4. 연금저축 제도 세제 변경

- 2014년부터 제도 변경 (소득공제→세액공제)

연400만원 납입시 납입액×12%(48만원)를 환급받게 되어 세율 구간이 12%보다 높은 과세표준 1,200만원(연봉 약3천만원) 이상자는 현행보다 불리해짐.
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감소하며 이 경우 비과세 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음.

[과세표준 구간별 환급액, 400만원 납입시]

과세표준	소득세율	기존환급액	개정 후 환급액	
0~1200만	6%	24 만원	48 만원	+ 24 만원
1200~4600만	15%	60 만원		- 12 만원
4600~8800만	24%	96 만원		- 48 만원
8800만~1.5억	35%	140 만원		- 92 만원
1.5억원 초과	38%	152 만원		- 104 만원

4-5. 장기 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

-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(소득세법 16조 1항 9호)
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하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.
-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외 (비과세 조항, 소득세법 시행령 25조)
 일시납 계약 - 총 납입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
 월납 계약 -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

